

日本석유업계

열병합발전 시스템 개발에 본격참여

日本 석유업계가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경질중유, 등유등을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도시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는 형태에 비해 코스트가 낮은 것이 장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석유업계의 열병합발전시스템에의 참여는 日本정부가 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회사 이외에도 전기공급을 인정키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더욱 촉진되고 있다.

최근 日本石油는 본사에 열공급사업을 전담하는 특별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전국 18개 지점에 2명씩 열공급사업담당자를 배치했다. 이것은 전국의 도시 재개발이나 신설빌딩을 대상으로 냉난방, 급탕등의 열공급사업受注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또 열공급을 통해 전기판매도 계획하고 있다.

日本石油는 이미 東京・羽田沖의 신국제공장, JR西日本の下關역전 재개발사업에 대해 자체 사업계획안을 제안하는 한편 호텔, 수퍼마켓등 빌딩에 대해서도 백여건을 제안하고 있다. 日本石油는 지난 84년 8월, 横浜市の 중앙기술연구소에 경질중유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 實證플랜트를 설치하여 2백20kw짜리 2기의 발전과 90냉동톤의 열공급을 실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出光興産도 금년부터 전국의 지점과 특약점을 활용하여 열병합발전 판매에 나서고 있다. 出光興産은 우선 올해에 24건 이상의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호텔, 병원, 스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출력 20~1백kw의 가스엔진, 50~2천kw의 디젤엔진, 4백kw이상의 가스터빈등을 갖추고 있다.

昭和쉘石油도 개발부내에 열병합발전업무를 전담하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그룹을 발족시켰다. 이것은 열병합발전도입에 있어서 고객의 에너지사용상황을 진단, 요구에 맞는 설비설계를 담당하는 기술자집단으로 열병합발전에 소프트를 붙여 판매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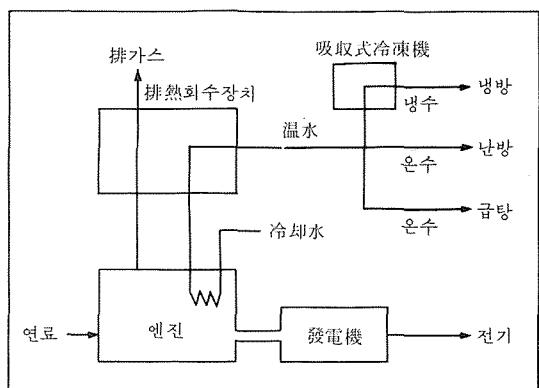
昭和쉘에서는 작년 4월에 계열사인 昭和四日市石油 四日市 정유공장에 열병합발전시스템을 도입했고, 지난 7월부터는 新潟정유공장에서도 출력 3천5백kw의 디젤엔진방식의 열병합발전이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와같은 실적을 토대로 시판을

결정했다.

한편 석유원매회사 외에도 LPG(액화석유가스)원매회사의 업체단체, 日本LPG가스협회도 곧 LPG이용열병합발전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2, 3년안에 LPG전용엔진개발등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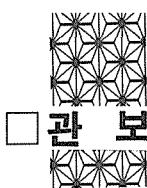
열병합발전시스템은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공급하는 한편 排熱을 회수하여 냉난방, 급탕용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에너지이용효율이 80% 정도로 높기 때문에 도시재개발지역이나 공장과 호텔, 병원등 열수요가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열병합발전 시스템



이보다 앞서 東京ガス등 가스회사에서 가장 먼저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엔진과 가스터빈방식의 열병합발전시스템을 개발했다. 東京ガ스의 경우 芝浦의 본사빌딩 재개발지구를 비롯해 그룹의에서도 상당한 납품실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전기회사에서도 전기공급메뉴다양화의 일환으로 연료전지에 의한 열병합발전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석유회사의 경우는 석유제품수요개발대책의 일환으로 열병합발전시스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



◎ 동력자원부고시 제187-53호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고시증 개정

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에 관한 고시(제187-31호, 제86-6호 및 9호)중 제1항의 가호인 제조장 반출가격과 나호인 정유회사 전국 균일수송비를 별첨과 같이 개정 고시 한다.

1987. 10. 16.
동력자원부장관

첨부 : 국내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증 제조장 반출가격 및 정유회사 전국균일수송비

부 칙

- 이 고시는 '87. 10. 16 0시부터 시행공시한다.
- 동력자원부고시 제86-6호 1항의 나('86. 2. 20), 제86-10호('86. 4. 2) 및 제187-31호 1항('87. 6. 12)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1. 국내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가. 제조장 반출가격

(단위 : 원/ℓ)

유종별	구분	반출가격	세포함가격
고급휘발유		296.69	652.72
무연휘발유		222.47	452.72
보통휘발유		214.98	472.96
군용휘발유		250.00	250.00
등유		171.56	188.72
저유황경유(0.4W%)		154.92	185.74
경유		152.23	182.52
저유황경질중유(1.6W%)		140.34	154.38
경질중유		138.45	152.30
저유황중유(1.6W%)		124.53	136.98
중유		120.40	132.44
저유황B-C유(1.6W%)		111.51	122.66
저유황B-C유(2.5W%)		109.55	120.51
B-C유		106.28	116.91
아스팔트		142.98	157.28
프로판(일반용)(원/kg)		274.99	326.69

프로판(도시가스용)(원/kg)	162.50	193.05
부탄(일반용)(원/kg)	274.53	326.15
부탄(도시가스용)(원/kg)	154.51	183.56

주) 나프타 제조장 반출가격은 다음의 나프타 최고판매가격 산출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나프타 최고판매가격(이하 "국내나프타가격"이라 한다)은 매월별로 월중의 국제나프타가격으로 조정되고, 조정된 가격의 적용일은 다음달 1일로 한다.

(2) 대한석유협회는 이 결정방법에 따라 조정되는 국내나프타가격을 산출하여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의 확인을 거쳐 즉시 정유사와 실수요자에게 통보하고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국제나프타가격의 산출방법 및 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

(가) 국제나프타가격이라 함은 Platt's oilgram price report지에 게재된 일본 C & F 가격(거래일 기준)의 중간치의 당해월 일일산술평균가격에 당해월의 일일평균환율(미합중국통화의 전신환매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가격이 계재되지 않거나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날은 직전일의 가격 및 환율을 적용한다.

(나) 국제나프타가격 산출시에 적용되는 환산계수는 1메트릭톤은 8.9 배럴로, 1배럴은 158.984리터로 하고 산출된 국제나프타가격은 소숫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한다.

나. 정유회사 전국균일수송비

(단위 : 원/ℓ)

유종별	구분	수송비	적용지역
휘발유(고급, 보통)		7.66	서울, 인천, 수원, 춘천
휘발유(무연)		7.08	원주, 강릉, 목호, 황지
등유		5.27	청주, 충주, 제천, 청안
저유황경유(0.4W%)		5.74	대전, 홍성, 서천, 오천
경유		5.74	군산, 전주, 이리, 정읍
저유황경질중유(1.6W%)		5.27	남원, 신태안, 목포, 여수
경질중유		5.27	순천, 강진, 영산포, 광주
저유황중유(1.6W%)		5.27	법성포, 삼천포, 쌍무, 마산
중유		5.27	진주, 부산, 울산, 포항
저유황B-C유(1.6W%)		5.27	대구, 안동, 점촌, 김천
저유황B-C유(2.5W%)		5.27	영주, 체주, 온산
B-C유		5.27	
프로판(일반용)(원/kg)		34.19	
부탄(일반용)(원/kg)		33.36	

- 주) (1) 상기수수료는 정유회사로부터 구매시 제조장가격(세포함가격)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가산됨.
(2) 정유회사는 상기제품에 대하여 상기 적용지역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별도의 수송비를 징구할 수 없음.
(3) 상기 적용지역에서의 제품인도지점의 우선 순위는 정유공장, 저유소, 부두, 역두임.
(4) 정유회사는 구매자가 상기 적용지역에서 제품인도를 요구할 경우 구매자가 요구하는 지역에서 인도하여 출 책임을 지며, 구매자 요구지역과 다른지역에서 인도하게 될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지역까지의 수송실비를 구매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5) 발전사업용 B-C유에 대한 수송비는 정유공장 인접지역 발전소 및 타발전소 구분없이 각 발전소 도착기준 2.99원/l이 균일하게 적용됨.
(6)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주도내에 일정량의 제품을 비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정유회사가 별도 부담하여야 함.
(7) 정유회사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연근해 어업용 면세유류를 정유공장(각 정유회사의 부산, 인천, 울산, 온산, 여천소재의 저유소를 포함한다)에서 구매하여 그 책임으로 수송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상기 균일수송비를 징구할 수 없음.

◎ 동력자원부고시 제87-54호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고시
중 개정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개정고시(동력자원부고시 제84-9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7. 10. 16
동력자원부장관

다 음

제 1 항(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금액) 중 “가 및 나”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할 금액을 수입 석유 1 배럴당 미합중국통화 3.02\$에 통관일 이내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다만, 프로판 및 부탄수입시에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할 금액을 수입프로판 혹은 수입부탄 1 메트릭톤당 미합중국통화 93\$에 통관일이내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1987. 10. 16 통관분부터 차기 개정고시 적용 직전 통관분까지 적용한다.

□ 石油圖書案内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87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